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74 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신장식·황운하·장종태

김준형 · 김선민 · 정춘생

서왕진 · 강경숙 · 이용우

이해민 · 차규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, 이와 같은 불공정 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'사실관계의 조작,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'등의 '법 왜곡'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.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 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 히 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

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,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(안 제123조의2 신설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3조의2(법왜곡) ①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에 처한다.
 - 1.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
 - 2. 법령적용의 왜곡(증거관계 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한다)
 - ② 지휘·감독자가 지휘·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같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3조의2(법왜곡) ①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 1.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2. 법령적용의 왜곡(증거관계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한다) ② 지휘·감독자가 지휘·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

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④제1항부터제3항에규정된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은「형사소송법」제249조에도불구하고20년으로한다.